

고려-금 간 사절 왕래에 나타난 주기성과 의미*

한 정 수**

머리말

- I. 고려-금 간 국교 성립과 사절 왕래
 - II. 양국 사절 파견에 나타난 주기성과 의미
- 맺음말

요약

본 연구는 고려와 금국 간에 오고간 정기 사절 왕래의 내용 정리를 통해 양국 간 사절 왕래의 주기성을 고찰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 보고자 한 것이다.

고려에서 요에 보낸 사행의 명목은 모두 30여종에 달하였고, 요에서 고려에 보내진 사절은 국왕 및 태자 책봉 등을 비롯하여 17종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정기적으로 오간 사절단을 보면, 몇 가지로 정리된다. 고려에서 요에 보낸 정기 사행은 하정사, 하절사, 진방물사, 사하생신사, 사횡선사 등이었고, 요에서 고려에 보낸 정기 사행은 하생신사, 횡선사 등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생신사 관련 양국의 사행은 다른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50-A00004)

** 대진대학교

투고일 2008.8.1.

심사일 2008.9.1.

심사완료일 2008.9.17.

정기사행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다. 즉 고려 국왕의 생일에 맞춰 고려에 도착하거나 혹은 이에 대한 감사 사절이 곧바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횡선사의 경우 대개 6월에 요의 사절이 도착하였지만 그에 대한 답빙 차원의 사절은 대개 11월로 맞춰져 보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생신 및 횡선 관련 사절의 왕래 시기와 주기성에 대한 배경과 그 의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고려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이기는 하나 여기서는 6월 및 11월에 행해진 고려의 국가 행사 등이 그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자 하였다. 말하자면 6월의 경우 태조 휘신도량으로 인한 국왕의 제향 및 봉은사행이나 국왕의 보살계 행사, 도목정사 중 권무, 조운의 운송 시한 등이 주목되었다. 11월의 경우 국가행사는 중동팔관회를 정점으로 12월 도목정사, 이듬해 정월 정단, 상원연등에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행사와 물산의 집중, 교역 수요 등이 발생하여 생신 및 횡선 관련 사절이 이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본 것이다. 고려는 금의 정월 하례 때의 경우 사하생신사, 사횡선사, 진헌사, 하정단사 등 4 종류의 사신단 대략 도합 100여명 이상의 사절단이 금에 들어갔다. 이들은 사신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교역을 통한 이익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고려와 금의 사절 파견이 사대조공책봉이라는 정치위상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설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각도의 ‘사행무역’이 전개됨으로써 이를 매개로 한 고려-남송-서하-금의 교역망이 형성되고 그 속에서 사절 파견이 정형화되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주제어 : 칭신봉표(稱臣奉表), 사대조공(事大朝貢), 사절왕래(使節往來), 하생신사(賀生辰使), 사하생신사(謝賀生辰使), 횡선사(橫宣使), 사횡선사(謝橫宣使), 주기성(週期性), 사행무역(使行貿易)

머리말

고려왕조의 거란·여진족 등에 대한 기본 인식은 낙후한 문화를 가진 야만족이라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거란과 여진족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송을 압도하게 되자 그들에 대한 외교적 인식은 달라지게 되었다. 군사력의 비교 우위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고려는 그들과의 평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대조공 관계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¹⁾ 그렇지만 고려왕조는 강제에 의하지 않고 다원적 국제 질서를 활용하여 스스로의 노선을 택함으로써 자주적인 등거리 실리 외교를 전개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고려의 천하관 역시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고려는 건국 후 고구려 계승의식과 왕실 중심의 용손의식(龍孫意識) 및 해동천자·제불(帝佛)·신성황제 등의 군주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천하관과 군주관은 왕조의례의 바탕으로 정립되기도 하였는데, 정종 즉위년 11월 경자일의 팔관회에서부터 반영되었던 것이다.²⁾ 당시의 기록을 보면, 팔관회 대회는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날에는 왕이 신봉루에

1) 고려전기의 대외관계사의 연구성과를 정리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박종기, 1994 「고려시대의 대외관계」 『한국사』 한길사 ; 김순자, 1994 「고려와 동아시아」 『한국역사입문②』, 풀빛 ; 김순자, 2002 총론 : 고려전기 대중국관계사 연구의 현황 『역사와 현실』 43 ; 추명엽, 2001 「고려시기 대외관계사 연구동향과 국사교육」 『윤세철교수정년기념역사학논총 역사교육의 방향과 국사교육』 ; 채웅석, 2006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고려」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한편 고려의 대금외교정책 전반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朴漢男,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3 이 있다.

2) 『고려사』 권6, 세가 정종 즉위년 11월 경자.

서 주연을 베푼 뒤 저녁에는 법왕사로 행차하였으며 이튿날에는 동서이경(東西二京)·동북양로병마사(東北兩路兵馬使)·사도호(四都護)·팔목(八牧)에서 표문을 올려 축하하였다. 이때 송상과 동·서번과 탐라국에서 토산물을 바치자 이들에게 좌석을 배정하여 의례에 참가토록 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이후 상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³⁾

팔관회에서의 이러한 상례는 『고려사』 예지 중동팔관회조에서 다시 규정되고 있다. 대회일에 송의 강수(綱首) 등과 동서번자(東西蕃子), 탐라인들을 참여시켜 고려왕조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고 있다. 이때 그들은 조하를 하면서 진물장(進物狀)을 올리고 ‘성궁만복(聖躬萬福)’, ‘산호(山呼)’, ‘만세(萬歲)’ 등을 아뢰었다. 또한 그들이 바치는 사방의 공물과 여러 번의 공물이 동쪽 인덕문에서 나와 선인전 앞 뜰을 통과하여 서쪽 의창문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처럼 송·요·금 등과 실리적으로 사대조공 등의 국제관계를 설정하면서도 고려는 원 간섭기와는 달리 고려 스스로 천하의 한 축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고려는 이에 따라 고려-금 간의 양국 위상이 정립되기 전 여진 등의 북방 종족을 번(蕃)으로 보기도 했고⁴⁾ 또 팔관회적 질서⁵⁾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형식상 사대조공 관계를 갖춘 것이지만 고려왕조의 자주성은 그대로 용인되었던 것이다.⁶⁾

3) 예컨대 숙종 6년 11월 신미일의 기사를 보더라도 이때의 팔관회 때 송상과 탐라 및 동·북번 추장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고 있다(『고려사』 권11, 세가 숙종 6년 11월 신미).

4) 추명엽, 2002 「고려전기 ‘번(蕃)’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10세기 초~11세기 초에는 북번이 존재하였고 11세기 중반~11세기 말에는 북번이 동·서번으로 분화되어 조공으로서의 내조·내헌과 긴밀한 관계가 반영되었다. 그러나 12세기 후반 이후 북번과 동번은 고려 북계와 동계의 양계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5) 奥村周司, 1979 「高麗における八關會の秩序と國際環境」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6) 이러한 이해는 고려시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사절영접례를 분석한 奥村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고려와 금의 사절 왕래 관계를 보면 이러한 이해를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의 고려-금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고려의 북진정책과 자주, 군신관계에 따른 사대조공, 국왕책봉이라는 주제가 중심이 되는 한편, 대금외교정책 및 횡선사(橫宣使), 무역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제정세 속 고려 등을 밝히는 데까지 이르렀다.

여기서는 바로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고려와 금 간에 오고갔던 사절단의 파견 및 도착이라는 왕래 시기의 주기성을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주제는 실제 고려와 금이 어떠한 국가 위상을 설정하면서 양국 간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남송과 금을 잇는 완충지대이자 동아시아 무역과 관련한 고려왕조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지금까지 이해되어 왔던 고려-금의 관계가 사대조공 관계만이 아닌 ‘교역을 매개로 한 차등적 관계’⁷⁾이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周司의 연구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고려-요의 관계를 설정하는 의례가 빈례(賓禮)로 규정되고 있어 북면(北面)의 군신례가 아닌 국신(國信) 관계인 서면(西面)으로 이루어졌다 하였다(奥村周司, 1984 「使節迎接禮より見た高麗の外交姿勢」 『史觀』 10).

7) 본고에서 ‘교역을 매개로 한 차등적 관계’를 설정하고자 한 것은 인종 4년(1126) 양국간 ‘봉표칭번(奉表稱藩)’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실제 사절 교환에 있어서는 그러한 군신관계의 관철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개념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I. 고려-금 간 국교 성립과 시절 왕래

12세기를 전후하여 송화강 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완안부(完顔部)는 영가(盈歌)와 오아숙(烏雅束) 때를 중심으로 흥기하였다. 그들은 여타 여진 부족을 통합하면서 갈라진(曷懶甸) 일대까지 밀고 내려왔다. 숙종 6년 8월에 내려진 ‘여진이 동쪽에서 굴강(倔強)하고 있다.’라는 조서의 일부 내용은 이 같은 완안부 중심 여진 성장을 우려한 것이었다. 마침내 숙종 9년 및 예종 2년 여진 정벌을 시도하여 9성을 개척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완안부 세력을 저지하였지만 여진군의 계속된 공격과 9성 환부 등을 요구하는 화친 노력에 예종 4년(1109) 7월 선정전에서의 회의를 끝으로 9성 환부가 결정되었다.⁸⁾ 그리고 함주 성문 밖에서 단을 쌓고 하늘에 악심을 품지 않고 조공을 계속 하겠다는 맹서 의식을 가짐으로써 고려와 여진의 관계는 다시 안정되었다.

그러나 예종 10년(1115) 정월 생여진 완안 아골타(1068~1123)는 황제를 칭하면서 이름을 하늘을 뜻하는 민(旻)으로 고치고 ‘금(金)’의 국호를 정하였다.⁹⁾ 그리고 예종 12년 3월에 아골타는 본격적으로 고려와의 국가 관계의 위상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아지(阿只) 등 5인을 통해 보낸 서한에 따르면, 금국은 거란을 대국으로 섬겨왔는데 거란이 무도하자 하늘의 도움으로 거란을 멸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하였다. 또한 고려는 부모의 나라로 섬겨왔으므로 고려의 왕과 형제 관계가 된다 할 수 있지만 예종(1079~1122)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므로 금은 형으로서 ‘대여진 금국 황

8) 『고려사』 권13, 세가13 예종 4년 7월 을사.

9)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 10년 정월.

제'를 칭하고 고려를 동생 '고려 국왕'이라 하면서 화친을 허락하고 형제의 의를 맺자고 하면서 양마 1필을 보냈던 것이다.¹⁰⁾

금은 다시금 고려와 국가 간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다. 그것은 예종 12년 3월에 있는 금 태조의 서한에 대한 고려의 대응에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금에서는 예종 14년 2월 요나라를 쳐서 북쪽 상경에서부터 남쪽 해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적을 무찔렀음을 알리는 사신을 보낼 때 '고려 국왕에게 조서로서 알린다. [詔諭高麗國王]'라 하여 그 의도를 비추고 있었다.¹¹⁾

고려는 예종 14년 8월에 입장을 정리하여 금에 서한을 보냈다. 예종은 중서주사 조순거(趙舜擧)를 보내 금에 예빙하면서 답신을 보낸 것이다.¹²⁾ 고려는 이때 글 중에서 "하물며 그대들의 근원은 우리 땅에서 출발하였다."라 표현을 함으로써 금을 자극하였고 기왕의 국제 질서를 금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금은 고려에 대한 형제 관계를 공식적으로 거두어들이고 군신 관계를 맺을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려는 금에 대한 입장을 사대 관계로까지 격상할 생각을 갖지 않았다. 그것은 인종 3년 5월의 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고려 측에서 사재소경 진숙과 상의봉어 최학란을 금에 보내자 금에서는 국서(國書)가 표문이 아니며 신하라 하지 않았다 하면서 받지 않은 바 있었기 때문이다.¹³⁾ 금에서는 이미 금을 군(君)으로 고려를 신(臣)으로 위상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고려 조정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못하였다. 인종 4년 2월

10)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 12년 3월 계축.

11)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 14년 2월 정유.

12) 『고려사』 권14, 세가14 예종 14년 8월 정축.

13) 『고려사』 권15, 세가15 인종 3년 5월 임신.

이자겸과 척준경 세력 제거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실패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¹⁴⁾ 다시 3월 신묘에 이르러서야 대금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이자겸과 척준경의 ‘소국이 대국을 섬기는 것은 선왕의 도’라는 논리에 따라 사신을 보내고 예빙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로서 제시되었다.¹⁵⁾ 을미일에 태묘에서의 서사(筮事)를 통해 강화가 공식 결정되었다.¹⁶⁾ 이에 따라 4월 정미에 정응문과 이후를 금에 보내면서 ‘칭신상표(稱臣上表)’를 행하게 된다.¹⁷⁾¹⁸⁾ 인종이 보낸 표문에서는 ‘伏念臣墉土小邦眇躬涼德’라 하여 자신을 낮추는 표현을 썼다. 또한 금에서는 이에 대해 회조(回詔)하길 상표칭신하고 아울러 토산물을 진봉한 것 등에 대해 잘 알았다 하면서 군부(君父)와 신자(臣子)의 의리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니 대대로 이 교훈을 잊지 말라 하였다. 그리고 실행할 조건들은 차차 사신을 보내 알리겠다고 하였다.¹⁹⁾

인종 4년 7월 송에서 함문지후 후장 등 60여 명을 보내 고려-송의 군

14) 『고려사』 권15, 세가 15 인종 4년 2월 신유.

15) 『고려사』 권15, 세가 15 인종 4년 3월 신묘.

16) 『고려사』 권15, 세가 15 인종 4년 3월 을미.

17) 『고려사』 권15, 세가 15 인종 4년 4월 정미.

18) 박한남은 인종 4년에 있는 백관회의 참석자들의 대외관을 분석하면서 이자겸과 척준경 등에 의한 사대결정에 당시 정치세력이 무조건 찬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진과의 군사적 체험과 유교적 명분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주체의식과 합리적 판단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하여 당시 결정이 이자겸에 의해 주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 본 바 있다(박한남, 『高麗의 對金外交政策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채웅석은 이자겸 등의 칭신상표 주장 및 그에 동조한 세력을 형세론에 따른 내수론자들로 분류하고 이에 반해 숙종~예종 초의 여진 정벌론과 맥락을 같이하면서 자국 중심의 천하관 또는 다원적 천하관의 견지에서 왕도정치를 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윤언이 등을 주목하여 이를 대금강경론자로 분류하였다. 특히 대금강경론은 묘청 세력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들은 국제정세를 이용, 왕조의 존엄성과 국제관계에서의 위상 격상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고 보았다(채웅석, 앞의 논문, 156~160쪽).

19) 『고려사』 권15, 세가15 인종 4년 4월 정미.

사적 제휴를 통해 금을 평정하지는 제의를 하자 고려는 근래의 재변 등으로 군량과 군기 등을 수선할 필요가 있고 적이 강하고 험한 지역에 있어 공략하기가 수월치 않음을 들면서 일차적으로 송의 군사적 성과를 보아 협력하겠다 하면서 완곡하게 거절한 바 있었다.²⁰⁾ 송의 이러한 군사적 제휴 시도는 금을 자극하였다.²¹⁾ 이에 상응하여 금은 9월 신미일 선유사를 보내 보주(保州)를 고려에 돌려주겠다는 것과 사신 왕래는 요 때와 같이 할 것을 알려 왔다.²²⁾ 인종은 이어 10월 무술에는 대명궁에서 금의 사신들을 전별하며 회표(會表)하여 사례하길 요와의 구제와 같이 대하였다 하였다. 이로써 공식적 고려 - 금 간의 국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²³⁾ 고려는 이처럼 금 중심의 국제 질서를 인정하면서 영토적 실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인종 6년 6월에도 송에서는 국신사 양응성 등을 보냈는데, 이때 그들은 고려에 ‘제후의 도는 근왕(勤王)에 있으며 다른 제후들이 이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 대의(大義)이다’라 하면서 고려에서 해로를 열어 휘종·흠종 두 황제를 모셔 오는데 협조해 줄 것을 청한 바 있었다. 그러나 고려는 해로를 여는 것이 양국에 모두 해로울 수 있는 것이라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또한 예종 12년 금에 대한 우려를 이미 표시한 바 있었는데 이를 거절한 송측의 오판을 들면서 완곡히 송의 요구를 거절하였다.²⁴⁾ 이처럼

20) 『고려사』 권15, 세가 15 인종 4년 7월 정미·계미.

21) 고려와 송의 교빙에 대해서는 박용운,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上)』 『韓國學報』 81, 1995 겨울 및 『高麗·宋 交聘의 목적과 使節에 대한 考察(下)』 『韓國學報』 82, 1996 봄 참조.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 당시 송의 고려에 대한 인식 및 고려의 송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고려는 문화 수용 및 정치적 목적에서 송에 접근하였고 송은 연려제요 등을 위한 목적에서 접근하고 있어 결국 양국의 이해관계가 어긋나고 있음을 밝힌 논고로는 안병우, 『고려와 송의 상호인식과 교섭 : 11세기 후반~12세기 전반』 『역사와 현실』 43 참조.

22) 『고려사』 권15, 세가 15 인종 4년 9월 신미.

23) 『고려사』 권15, 세가 15 인종 4년 10월 무술.

24) 『고려사』 권15, 세가 15 인종 6년 6월 기사, 8월 경오·갑술.

송이 다급하게 고려와의 연결을 시도하자 금은 고려의 칭신사대의 맹서를 표문 내용에 넣어 이를 받아 내고자 하였다. 즉, 고려에 대해 보주 지역 여진계의 호구 조사와 환부 및 고려 국왕의 책봉, 그리고 송·요에 대해 행한 표문 내용 즉 ‘만약 이 맹약을 어긴다면 사직이 위태롭게 되고 자손이 끊어질 것이며 혹은 신명이 이를 죽여 왕위를 보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구절을 넣을 것을 요구하여 고려의 실질적인 복속을 상징하는 의식을 거행하게끔 하였다.²⁵⁾

이에 따라 인종 5년(1127) 정월부터 금에서는 인종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신사(生辰使)를 보냈고 고려는 금에 표문을 붙여 사례함으로써 공식적 사절 왕래가 시작되었다.²⁶⁾ 양국간의 관계가 정립되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책봉 및 연호 사용 등이 있었다. 금의 희종(1135~1149)은 송을 균신사대 관계로 복속시켰고, 연호를 천권(天眷)에서 황제에 의한 천하 통일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황통(皇統)으로 바꾸었다.²⁷⁾ 남송과의 전쟁이 지속되면서 고려 국왕 책봉은 미루어져왔으나 결국 위에 언급한 바처럼 남송과의 사대 관계가 정립되자 상황은 급속히 진전되었다. 인종 20년 5월 경술 및 무오에 걸쳐 처음으로 이루어진 고려 국왕 책봉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늦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²⁸⁾ 예컨대 금의 황제는 책문에

25) 『고려사』 권15, 세가 15 인종 6년 12월 갑술. 여진계 호구 송환 문제는 대체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채웅석, 앞의 책, 161쪽 참조).

26) 『고려사』 권15, 세가 15 인종 5년 정월 정유·병오. 인종 5년의 사절을 보면 금에서는 하생신사와 선경사(宣慶使) 등이 왔고 고려에서는 하천청절사(賀天淸節使)와 사하생신사(謝賀生辰使) 등이 보내졌다. 이후 고려에서 금에 보낸 사신을 크게 정기 사행과 비정기 사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기사행의 경우 진봉사, 절일사, 하정사, 생일회사사, 동경지례사, 사행선사 등이 있고, 비정기 사행의 경우는 책봉, 흉례, 길례 등에 따른 사행과 기타 고주사나 밀진사, 선경사, 보유사 등이 있기도 하였다. 사행의 구분에 대해서는 박한남, 1993, 앞의 논문 제 4장 사신왕래를 통해 본 대금외교정책 참조.

27) 『금사』 권4, 본기 희종 황통 원년 정월. 이 달에 금의 조정에서는 희종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존호를 올렸는데, 그것은 ‘崇天體道欽明文武聖德皇帝’였다.

28) 『고려사』 권17, 세가17 인종 20년 5월 무오.

서 “여러 해가 지나도록 전책(典冊)이 칭해지지 않아 공의(公議)에 어긋날까 두렵다. 이제 사신에게 지절과 책명을 보낸다.”라 하였다. 고려에서의 금 연호 사용은 금의 회종이 쓴 황통(皇統)에서부터 시작된다. 금의 황통 연호 사용은 인종 20년 7월 신축부터 시작되었고 이때 태묘 및 12릉에 고유의 의식이 행해졌다.²⁹⁾ 이것이 이처럼 늦춰진 데에는 금과 송간의 화의가 정해지기까지 고려-금-송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려와 요와의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고려에서 요에 보낸 사행의 명목은 조공·고봉태자(告封太子)·하절일(賀節日)·하태후생신(賀太后生辰)·하정(賀正)·하책봉(賀冊封)·하수복동경(賀收復東京)·하개국호(賀改國號)·하즉위(賀即位)·사은(謝恩)·사봉책(謝封冊)·사사고명(謝賜誥命)·사횡선(謝橫宣)·결책(乞冊)·문후(問候)·조위(弔慰)·회장(會葬) 등 30여종에 달하였다. 요에서 보내진 사행의 명목은 책왕(冊王; 12회)·책태자(冊太子)·하생신(賀生辰; 73회)·하조(下詔)·회사(回謝; 11회)·제전(祭奠)·고애(告哀)·정병(請兵)·독흥사(督興師)·횡사(橫賜; 16회) 등 17종에 달하였다.³⁰⁾

하정사는 모두 73회 정도가 파견되었으며 보내진 시기는 신종 2년과 3년에 한해서 정월에 파견되는 예외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11월이 주류를 이룬다. 금의 수도인 중도(북경)까지 소요 시일을 계산하여 잡은 것이었다. 이는 정기 사행의 경우 비슷하게 적용되었다. ‘진방물(進方物)’로 주로 표기되는 진방물사는 51회로 고려에서는 주로 팔관회를 전후한 중동 11월에 보내졌는데 하정사와 함께 혹은 하정사의 출발 전후 날짜에

29) 『고려사』 권17, 세가17 인종 20년 7월 신축.

30) 이러한 통계에 대해서는 김위현, 『高麗時代 對外關係史 研究』, 경인문화사, 2004, 46~47쪽 및 박한남, 『高麗 前期 ‘橫宣使’ 小考』 『阜村 신연철교수 정년퇴임기념 사학논총』 일월서각, 1995, 501~502쪽 참조.

떠났다.

하절사는 모두 80회 정도 보내졌다. 금 태종대부터 사행이 시작되었는데, 금 황제의 절일로는 천청절(天淸節)·만수절(萬壽節)·용흥절(龍興節)·만춘절(萬春節)·천수절(天壽節) 등이 있었고, 이때 금의 황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을 보낸 것이었다.³¹⁾ 천청절은 금 태종의 생일로 10월 15일이었고, 만수절은 희종의 생일로 정월 17일, 용흥절은 해릉왕의 생일로 정월 16일(금사에서는 용흥절이 아닌 생신으로만 표시), 만춘절은 세종의 생일로 3월 1일(혹2월 29일), 천수절은 장종(章宗)의 생일로 9월 1일, 만추절은 위소왕(衛紹王)의 생일로 8월 10일이었다. 이러한 절일에 맞춰 고려에서는 사행을 출발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국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절 가운데 특이성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금에서 고려로 보내진 하생신사와 횡선사, 그리고 고려에서 금으로 그 답례로 보내진 사하생신사와 사횡선사가 그것이다.

금에서 고려에 보내진 사절로 가장 많은 경우가 하생신사였다. 생신을 축하하는 사절이 중국측으로부터 오게 된 것은 요 때부터였다. 현종 14년 7월 요에서는 태보 황신(黃信)을 보내 현종의 생일을 축하하였던 것이다.³²⁾ 이후 요에서는 고려 국왕 생일을 정확하게 파악하려 노력하였고 이때를 맞추지 않으면 고려측으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하였다.³³⁾

31) 『고려사』 세가의 희종 6년, 7년 그리고 강종 원년에 절일사로 파견된 사신들의 경우 ‘하만춘절’이라 하고 있다. 당시는 금의 위소왕의 생신 축하사절이었는데, 『금사』에서는 위송왕의 생일을 만춘절이 아닌 만추절이라 하고 있다. 만춘절이 세종의 절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려사』 희종 및 강종 대의 만춘절은 만추절이라야 옳을 듯하다.

32) 『고려사』 권5, 세가5 현종 14년 7월 계해삭.

33) 『고려사』 권10, 세가10 선종 2년 9월 임신. 이때 요에서 어사중승 이가급(李可及)을 하생신사로 보냈으나 생신이 지난 후에 도착하자 고려에서는 이에 대해 ‘이름은 가급인데 어찌 불급하였는가?’라 조롱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성종이 생일을 천춘절(千春節)이라 절일로 칭한 이래 역대 태자 및 국왕은 절일 명칭을 정하였고 이날은 신하들을 위해 연회를 배설하거나 선물을 하사하는 등 행사를 하였던 것이다.

금에서는 요가 행한 하생신사의 파견을 답습하였다. 이 때문에 고려 국왕의 생일에 대해 이첩하여 묻기도 하였다.³⁴⁾ 하지만 실제 하생신사의 파견 시기를 보면 고려 국왕의 생신 시기와는 차이가 난다. 인종 5년 정월 금에서는 처음으로 인종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고수(高隨)를 보낸 바 있었다.³⁵⁾ 당시 인종은 생신 절일에 대해 태자 때의 안정절(安貞節)을 즉위년 9월에 경룡절(慶龍節)로 바꾸었다. 인종은 예종 4년 10월 기해(28)일에 태어났다고 인종 세가에서는 기록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이는 기록의 착오로 보이며 예종 4년 10월 을해(4)에 태어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인종의 생신은 10월인데 금에서는 인종대의 경우 계속해서 정월에 생신 축하 사절을 보냈다.

이후 고려 국왕의 생신과 절일 명칭을 보면, 의종의 경우 4월 11일 하청절(河淸節), 명종의 경우 10월 17일 건흥절(乾興節), 신종의 경우 7월 11일 함성절(咸成節), 희종의 경우 5월 8일 수성절(壽成節), 강종의 경우 4월 5일 광천절(光天節) 등이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표 1】 고려-금 양국간 하생신사 및 사하생신사 왕래를 보자.

【표 1】 고려-금 양국간 하생신사 및 사하생신사 왕래

	賀生辰使(금에서 고려)		謝賀生辰使(고려에서 금)	
	시기	사절	시기	사절
1	1127.01(인종 5년)	高隨	1127.11(인종 5년)	石俊·李瑱
2	1128.01(인종 6년)	蘇懷玉	1128.11(인종 6년)	工部員外郎 俞元胥
3	1129.01(인종 7년)	寧州管内觀察使 楊公孝	1129.11(인종 7년)	文公裕

34) 『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2년 12월 임인.

35) 『고려사』 권15, 세가15 인종 5년 정월 경유.

36) 『고려사』 권15, 세가15 인종. 그러나 예종 4년 10월의 세가 기록을 보면 10월 을해 일 즉 4일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경룡절과 관련한 다른 기록을 보면, 인종 8년 10월 계유일에 경룡절이라 하여 여수(慮囚)한 바가 있었다. 계유일은 4일이었다. 그렇다면 인종의 경룡절은 10월 기해가 아닌 을해가 맞으며 10월 4일이 그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4	1130.01(인종 8년)	劉汙	1130.11(인종 8년)	閣門副使 李訥
5	1131.01(인종 9년)	李鎭烈	1131.11(인종 9년)	禮部郎中 高唐愈
6	1132.01(인종 10년)	永州觀察使 高成山	*1132.01(인종 10년)	高成山還附表以謝
7	1133.01(인종 11년)	高陳可	1133.11(인종 11년)	郎中 金永錫
8	1134.01(인종 12년)	諫議大夫 張浩	1134.11(인종 12년)	員外郎 金永寬
9	1135.01(인종 13년)	桂州管内觀察使 高春 等	1135.10(인종 13년)	戶部郎中 康福興
10	1136.01(인종 14년)	秦州管内觀察使 蕭綏	1136.10(인종 14년)	大府少卿 申至冲
11	1137.01(인종 15년)	中書舍人(乾文閣待制) 吳激	1137.11(인종 15년)	兵部員外郎 柳昂
12	1138.01(인종 16년)	永州管内觀察使 杜誼	1138.11(인종 16년)	刑部員外郎 金臣璉
13	1139.01(인종 17년)	高州管内觀察使 耶律寧	1139.11(인종 17년)	刑部員外郎 陳灌
14	1140.01(인종 18년)	秦州管内觀察使 完顏昂	1140.10(인종 18년)	刑部員外郎 朴純冲
15	1141.01(인종 19년)	同知宣徽院事 趙興商	1141.11(인종 19년)	李之茂
16	1142.01(인종 20년)	肇州防禦使 烏陵錫가	1142.10(인종 20년)	崔褒偁
17	1143.01(인종 21년)	洺州防禦使 蕭嗣貞	1143.11(인종 21년)	兵部員外郎 林仲
18	1144.01(인종 22년)	大府監 蕭諫	1144.11(인종 22년)	左司郎中 朴義臣
19	1145.01(인종 23년)	翰林直學士 趙洞	1145.윤11(인종 23년)	借衛尉卿 井彥深
20	1146.01(인종 24년)	衛州防禦使 完顏昇		
21	1147.11(의종 원년)	完顏宗道		
22	1148.11(의종 2년)	高景山	1148.11(의종 2년)	宋公贊
23	1149.11(의종 3년)	完顏多祐	1149.11(의종 3년)	李之中
24	1150.11(의종 4년)	耶律羅松		
25	1151.11(의종 5년)	(東京路兵馬都總管府判官) 蕭子敏	1151.11(의종 5년)	宋瓌
26	1152.11(의종 6년)	完顏持正(都水使者 完顏麻撥)	1152.11(의종 6년)	柳公材
27	1153.11(의종 7년)	少府監 阿勒根彥忠(吏部郎中 窟台山)	1153.11(의종 7년)	禮部員外郎 尹麟瞻
28	1154.11(의종 8년)	大府監 李珪	1154.11(의종 8년)	奉說
29	1155.11(의종 9년)		1155.11(의종 9년)	刑部員外郎 金溫中
30	**1156.11(의종 10년)	定遠將軍 耶律遵禮		
31	1157.11(의종 11년)	少府監 完顏德壽	1157.11(의종 11년)	工部郎中 李光縉
32	1158.11(의종 12년)	(敎坊提點)高存福		
33	1159.11(의종 13년)	安遠大將軍 完顏德溫(翰林待制 完顏達紀)		
34	1160.11(의종 14년)	高通		
	1161.08(의종 15년)	太常博士 張崇		
35	1163.11(의종 17년)	大府監 耶律章(許王府長史 移刺天佛留)		

고려-금 간 사절 왕래에 나타난 주기성과 의미

36	1164.11(의종 18년)	大府監 烏骨論守貞(太子少詹事 烏古論三合)	1164.윤11(의종 18년)	金莊
37	1165.11(의종 19년)	完顏章(大宗正丞 璋)	1165.12(의종 19년)	衛尉少卿 王輔
38	1166.11(의종 20년)	大府監 耶律成正(尙書兵部侍郎 移刺按答)	1166.12(의종 20년)	禮賓少卿 崔椿
39	1167.11(의종 21년)	少府監(都水監) 李衛國	1167.11(의종 21년)	禮賓少卿 崔價
40	1168.11(의종 22년)	(翰林待制) 完顏靖	1168.11(의종 22년)	禮賓少卿 徐諷
41	1169.11(의종 23년)	大府監 馬貴忠(提點司天臺 馬貴中)	1169.12(의종 23년)	太府少卿 襄衍
42	1170.10(명종 즉위년)	大宗正丞 耶律紜		
	1173.11(명종 3년)	引進使 大洞		
	1174.11(명종 4년)	儀鸞局使 曹士元		
43	1174.12(명종 4년)			
	1175.11(명종 5년)	宿直將軍 阿典蒲魯虎		
44	1176.01(명종 6년)	大監 阿典溥 等		
	1176.11(명종 6년)	兵部郎中 移刺子元	1176.12(명종 6년)경자	禮賓少卿 王珪
45	1177.01(명종 7년)	耶律子元	1177.11(명종 7년)	內侍員外郎 崔貞
46	1178.01(명종 8년)	(宿直將軍) 僕散懷忠	1178.11(명종 8년)	將軍 奇世俊
47	1179.01(명종 9년)	(東上閣門使) 大府大將軍 小府監 左光慶		
48	1180.01(명종 10년)	(西上閣門使) 小府監 盧珙(拱)	1180.11(명종 10년)	郎將 沈進升
49	1181.01(명종 11년)	(太常少卿) 大府監 任偶	1181.11(명종 11년)	將軍 崔璉
50	1182.01(명종 12년)	耶律仲方	1182.11(명종 12년)	將軍 安允恭
51	1183.01(명종 13년)	大府監 僕散衍(宿直將軍 僕散忠佐)	1183.윤11(명종 13년)	將軍 李文中
52	1186.01(명종 16년)	昭毅大將軍 耶律履(禮部員外郎 移刺履)	1186.11(명종 16년)	中郎將 盧孝敦
53	1187.01(명종 17년)	(拱衛直副都指揮使) 昭毅大 將軍 韓景懋	1187.12(명종 17년)	禮賓少卿 崔存
54	1188.01(명종 18년)	耶律彥拱(翰林待制 趙可)	1188.11(명종 18년)	朱光美
55	1189.01(명종 19년)	(大理正 移刺彥拱)		
56	1190.01(명종 20년)	耶律炳(西上閣門使 移刺炳)	1190.11(명종 20년)	戶部侍郎 盧湜
57	1191.01(명종 21년)	完顏克忠(西上閣門使 移刺璉)	1191.12(명종 21년)	戶部侍郎 李至純
58	1192.01(명종 22년)	稱盤溫都說(近侍局副使 完顏匡)	1192.12(명종 22년)	戶部侍郎 丁光紱

59	1193.01(명종 23년)	(東上閤門使)禮部侍郎 張汝猷	1193.11(명종 23년)	戶部侍郎 陳光卿
60	1194.01(명종 24년)	大理卿 紇石烈理	1194.12(명종 24년)	戶部侍郎 柳邦氏
61	1195.01(명종 25년)	(戶部郎中)李敬義	1195.12(명종 25년)	戶部侍郎 孫弘
62	1196.01(명종 26년)	(知登聞檢院)賈益	1196.12(명종 26년)	戶部侍郎 金光嘗
63	1197.01(명종 27년)	(同知登聞檢院)阿弗罕德剛		
64	1200.11(신종 3년)	(禮部郎中)禮部侍郎 劉公憲	1201.07(신종 4년)	衛尉卿 秦彥匡
65	1201.12(신종 4년)	(武衛軍都指揮使司判官)工 部侍郎 納合鉉	1202.07(신종 5년)	將軍 韓抵
66	1202.11(신종 5년)	(尙掌局副使)戶部侍郎 李仲元	1203.07(신종 6년)	將軍 尹公直
67	1203.11(신종 6년)	兵部侍郎 尹孝	1204.08(희종 즉위년)	戶部侍郎 李徹
			1206.08(희종 2년)	衛尉卿 金升
			1207.08(희종 3년)	衛尉少卿 金義元
68	1208.11(희종 4년)	戶部侍郎 郭郭	1208.10(희종 4년)	禮賓卿 池利中
69	***1209.11(희종 5년)	戶部侍郎 幹勤正*	1210.06(희종 6년)	宋孝誠

※ 위 표의 내용 중 금에서 고려로 보낸 하생신사 관련 내용 중 짙게 표시한 부분은 『금사』 본기 기록을 토대로 표시한 것이다.
 *부분인 인종 10년 정월 기록은 이해 사하생신사 파견 기록이 없는 관계로 이때 고성산을 통해 사례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부분인 의종 10년 11월의 경우도 시기상 하생일사로 추정할 수 있다.
 ***희종 5년 11월의 경우는 이때 온 금의 사절을 하생신사로 추정한 것이다.
 (*, **, *** 부분의 기록은 『고려사』 세가 기록을 토대로 추정하였다.)
 ※ 위 표 중 고려에서 금으로 보낸 사하생신사 가운데 굵게 표시한 부분은 『금사』 교빙표를 참조한 것임.

각 왕대의 경우 『고려사』 세가 기록을 통해 금에서 온 하생신사를 보면 인종대에는 정월(20회), 의종대의 경우에는 11월(20회+1회),³⁷⁾ 명종대의 경우에는 정월(21회) 및 12월(1회), 신종대의 경우에는 11월(3회) 및 12월(1회), 희종대의 경우에는 11월(2회) 및 5월(1회) 등 69회가 나타난다. 이를 보면 금에서 보내진 하생신사의 경우 고려 국왕의 생일과는 어떤 연관 없이 보내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37) 명종 즉위년 10월로 기록된 하생신사의 경우는 명종이 아닌 의종을 위한 하생신사의 성격이 짙다. 대종정승 야율규가 오자 변리(邊吏)가 전왕이 양위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돌아갔다 하였기 때문이다(『고려사』 권19, 세가19 명종 즉위년 10월).

고려에서는 거란 때와 마찬가지로 하생신사가 오면 그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사절단을 보냈다. 『고려사』의 인종, 의종, 명종대의 경우 사하생신사는 11월에 보내고 있으며 신종 대에는 7월, 희종 대에는 6월 및 5월로 나타난다.

위의 【표 1】 고려-금 양국간 하생신사 및 사하생신사 왕래에서도 확인되듯이 신종대 및 희종대를 제외한 인종·의종·명종 대의 경우 11월에 사하생신사를 보내고 있다. 이 시기에 함께 보내진 것이 1년 3번 중의 하정·진방물사였다. 말하자면 금의 고려 국왕 생일 축하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명종 8년부터는 사절단에 무신들이 포함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 무인집권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금에서 고려에 주기적으로 보내진 사절을 보면 횡선사가 주목된다.³⁸⁾ 횡선사는 이미 요가 황제권 강화와 중주국으로서의 신의를 예물 하사를 통해 확인하는 의례 차원에서 행한 바 있었다. 요에 의해 파견된 횡선사는 정종 6년 4월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데 횡선사·횡사사·선사사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정종대(4회)의 경우 횡선사라는 명칭은 정월·10월·4월·6월 등 불규칙적으로 나타나지만 문종대 이후로는 11월과 12월로 집중되어 있다.³⁹⁾ 그런데 금에서의 횡선사 파견은 이와는 다른 경향이 보인다. 다음 【표 2】 고려-금 간 횡선사 및 사횡선사 왕래를 보면

38) 횡선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사를 보면, 거란황제의 칙사로 해석한 바 있고(稻葉岩吉, 『契丹橫宣橫賜の名稱』 『史林』 17-1, 1931) 혹은 일상적이지 않은 별도로 보내는 사행으로 보기도 하였다(金庠基, 『高麗時代史』, 동국문화사, 1961, 121쪽). 횡선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도한 박한남은 횡선사 파견이 거란의 입장에서 볼 때 황제권의 강화와 관련이 있고, 대외적으로 송의 國信使와 차별을 두면서 고려에 대한 적극적 화친정책의 일환이었다 하면서 비정기적인 報聘使를 3년 1회의 정기사행을 행함으로써 중주국의 신의를 보내는 일종의 의례였다고 성격을 규명한 바 있다. 이는 금대에 와서도 그 성격은 좀 더 일반화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박한남, 앞의 논문 참조).

39) 이에 대해서는 박한남, 앞의 논문 참조.

서 이를 확인해보자.

【표 2】 고려-금 간 횡선사 및 사횡선사 왕래

	橫宣使(금에서 고려)		謝橫宣使(고려에서 금)	
	시기	사절	시기	사절
1	1145.06(인종 23년)	大府監 完顏思海	1145.윤11(인종 23년)	借戶部侍郎 安綽裕
2	1148.06(의종 2년)	孛散守道	1148.11(의종 2년)	許進升
3	1151.06(의종 5년)	少府少監 肅忠	1151.11(의종 5년)	趙端臣
4	1154.06(의종 8년)	大府少監 梁彬	1154.11(의종 8년)	金仁愈
5	1157.06(의종 11년)	大府卿 張喆(簽書宣徽院事)	1157.11(의종 11년)	刑部員外郎 朴育和
6	1160.06(의종 14년)	耶律琳		
7	1163.06(의종 17년)	少府監 韓綱(引進使 韓綱)	1163.12(의종 17년)	殿中少監 金存夫*
8	1166.07(의종 20년)	尙書右司郎中 移刺道	1166.12(의종 20년)	衛尉少卿 金資用*
9	1169.07(의종 23년)	符寶郎 徒單懷貞	1169.12(의종 23년)	司宰少卿 李世美*
10	1174.06(명종 4년)	完顏疏(勸農副使 完顏蒲涅)	1174.07(명종 4년)	都官員外郎 魯璋
11	1177.06(명종 7년)	大府監 徒單良臣(滕王府長史 徒單烏者)	1177.11(명종 7년)	郎將 崔美
12	1180.06(명종 10년)	小府監 郭喜國	1180.11(명종 10년)	秘書少監 王度
13	1183.06(명종 13년)	大理卿 訖石烈(大理正 訖石烈朮列速)	1183.윤11(명종 13년)	員外郎 鄭允當
14	1186.06(명종 16년)	大理卿 李磐	1186.11(명종 16년)	禮部侍郎 任濡
15	1189.11(명종 19년)	完顏述	1189.12(명종 19년)	戶部侍郎 孫衍*
16	1192.06(명종 22년)	李朮魯至忠(尙書禮部員外郎 李朮魯子元)	1192.07(명종 22년)	秘書少監 (師威)*
17	1195.06(명종 25년)	納蘭昉	1195.08(명종 25년)	衛尉少卿 周元迪*
18	1201.06(신종 4년)	(直東上閤門)吏部侍郎 劉頰	1201.07(신종 4년)	工部侍郎 太守正
19	1205.07(희종 즉위년)	兵部侍郎 完顏立	1205.09(희종 즉위년)	司宰少卿 車富民
20	1210.06(희종 6년)	移刺荅貞	1210.07(희종 6년)	郎將 池方淑

※ 위 표의 내용 중 괄호안의 짙게 표시한 부분은 『금사』 본기 기록을 토대로 표시한 것이고, *부분은 『금사』 교빙표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표 2】 고려-금 간 횡선사 및 사횡선사 왕래를 보면, 금에서 파견된 횡선사의 경우 인종 23년 6월 기축에 대부감 완안사해(完顔思海)를 파견한 이래 회종 6년 6월까지 20회 정도에 이른다. 대개 고려-거란 간의 횡선사 파견처럼 3년에 1번씩 이루어졌다. 그러나 파견시기를 보면 6월이 16회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7월이 3회, 11월이 1회에 불과하다.

다음 고려에서 보내진 사횡선사의 경우를 보자. 금에서의 횡선사 파견에 대한 감사의 사절이었던 사횡선사의 경우 횡선사가 오면 거의 대부분 그에 대응하여 보내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사횡선사의 경우도 대략 3년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 【표 2】 고려-금 간 횡선사 및 사횡선사 왕래를 보면 앞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정기적이라 할만큼 3년 1빙을 취하고 있으면서 6월을 중심으로 횡선사가 파견되고 있고 고려에서는 이에 응해 주로 11월을 중심으로 사횡선사를 보내고 있다.

이밖에 부정기적이지만 국경을 넓히거나 존호를 받는 등의 경사를 알리기 위한 선경사(宣慶使)나 금 황실의 국상을 알리기 위한 보애사(報哀使), 고려 국왕의 국상을 애도하고 신앙의 집무를 권하기 위한 조위(弔慰)·제전(祭奠)·기복사(起復使), 국왕 즉위시 의문을 풀기 위한 순문사(詢問使) 등이 있었다. 고려에서는 금에서 보낸 이들 부정기적 사신들에 대해 사낙기복(謝落起復)·사선유등극(謝宣諭登極)과 함께 고주사(告奏使), 사책봉(謝冊封), 고애사(告哀使) 등을 보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고려에서 금으로 보내진 정기 사행 중 하절사를 제외한 진방물사, 하정사, 사하생일사, 사횡선사 등은 거의 비슷한 시기인 11월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난다. 금에서 보낸 정기 사행이라 할 하생신사의 경우는 11월(금에서는 9월 파견), 횡선사의 경우는 6월(금에서는 4월 파견)에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방물사, 하정사, 사하생일사, 사횡선사 등은 위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으나 날

짜를 달리하여 출발한 경우가 많았다. 이것이 말해 주는 것은 금의 경내에 입국한 날짜 역시 달랐을 것이라는 점이지만 『금사』에서는 정월 고려의 사신들이 내하하였다는 기록만 있어 이들 모두가 하례에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II. 양국 사절 파견에 나타난 주기성과 의미

앞 장에서 하생신사와 사하생신사, 그리고 횡선사와 사횡선사의 왕래 현황을 제시하면서 그 주기에 특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먼저 금나라에서 고려 국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신축하사를 이처럼 정월 혹은 11월을 중심으로 보낸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⁴⁰⁾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신종 3년 11월 신사일의 기록이다. 이때 금에서 예부시랑 유공헌을 보내 신종의 생신을 축하하였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길, 함성절은 본래 7월이나 전조 대정(大定) 갑자(甲子) 연례(年例)에 의해 12월 초1일을 함성절로 정하였다는 것이다.⁴¹⁾ 대정 갑자는 명종 4년에 해당한다. 명종의 생신은 10월 건흥절이었는데 금의 하생신사는 12월에 왔다. 이것이 하나의 연례가 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에는 부족하다.

숙종대의 사례를 보면 이 같은 하생신사 파견에 대한 일련의 이해를

40) 금에서는 고려생일사를 9월을 중심으로 출발시키고 있었다. 서하에 대해서도 금에서는 하생일사를 대개 9월에 출발시킨 경우가 45회 중 36회에 달하며 8월(4회), 5월(1회), 7월, 3월, 10월 각 1회로 확인된다. 그러나 서하에서는 고려와 달리 사하생신사를 거의 보내지 않았다.

41) 『고려사』 권21, 세가21 신종 3년 11월 신사.

얻을 수 있다. 숙종은 문종 8년 7월 28일(기축)에 태어났으며 그의 생일은 대원절(大元節)로 칭해졌다. 거란에서 숙종을 위해 하생신사를 보낸 것을 보면, 모두 8차례이며 12월로 집중되고 있다.⁴²⁾ 이 경우에도 숙종의 생신인 대원절과는 무관하게 보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종 및 인종대 나타나는 하생신사는 정월에 집중하여 내하(來賀)하고 있다. 참고로 예종은 문종 33년 정월 7일(정축)에 태어났고 왕의 생일은 함녕절(咸寧節)이라 하였다. 예종의 경우 함녕절에 맞춘 것이라 여길 만한 면이 있으나 인종대의 경우 다시 정월 내하로 맞지 않게 된다.⁴³⁾

여기서 그 배경을 무엇으로 추정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고려-금 간의 정치적 관계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다면 고려 내의 어떤 정황이 이러한 국면을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고려에서는 11월과 정월에 걸쳐 상당히 많은 국가적 행사들이 잇따랐다. 먼저 11월을 보면 이때의 가장 큰 행사가 중동팔관회였다. 주지하듯이 팔관회 행사는 서경의 경우 10월, 개경의 경우 중동 11월에 행사가 개최되면서 국내외 상인들, 중외 관료들의 하표와 봉물이 몰리는 때였다. 또한 이 때 이후로도 동지, 납향 등의 때가 이와 연결된다는 점이다. 12월 가장 큰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으로 12월 도목정사가 있었다. 그리고 신년 정월 및 2월 연등회와 이어진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고려에서 각종 수요가 몰리는 때이자 동시에 지방에서 각종 물품이 모이는 시기와 겹친다는 것이다.⁴⁴⁾

42) 예종의 경우는 문종 33년 정월 정축에 태어났고 생신을 함녕절(咸寧節)이라 하였다. 예종을 위해 요나라에서는 정월에 모두 10차례 하생신사를 보내고 있어 예종대의 경우는 함녕절에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 예종대에 이어 인종대에 금에서 정월에 하생신사를 보낸 것은 예종대의 경우를 따랐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43) 이와 관련하여 인종대 금의 하생신사파견이 예종대의 경우를 사례로 삼은 것이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숙종 및 의종 등 전후 왕대를 놓고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44) 이는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횡선사 및 하생신사 등에 대한 사례 사절인 사행선사

한편 금에서 파견된 횡선사가 6월에 집중된 이유는 무엇일까?45) 횡선사가 황제의 신의를 보이는 의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와 관련한 금측의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만 인종 23년 처음으로 파견될 때 6월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관례가 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겠으나 이는 좀 미흡하다.

하생신사의 파견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유를 금과 고려 양측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굳이 6월이 양측에서 동의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왕조에서 6월에 행해지는 연례행사는 크게 3가지였고 나머지 한 가지로는 조운과 관련된 것을 주목할 수 있다. 첫째는 대략 6월 2일을 기준으로 왕이 봉은사에 행차하여 태조를 위해 제향을 올리는 것이었다.46) 두 번째는 왕이 6월 15일에 궁궐에서 보살계를 받고 보살계 도량을 행하면서 죄수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행사를 갖추기도 하였다. 세 번째로는 고려의 관리들에게 있어 가장 큰 행사라 할 도목정사(都目政事)가 행해졌는데 이때 행해진 정사가 ‘권무(權務)’였다.47) 네 번째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조세와 공물 등에 대한 조운 시기이다. 고려의 경우 조세는 익년 2월에 조운하여 가까운 곳은 4월까지, 먼 곳은 5월까지 경창(京倉)에 운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및 사하생신사, 하정사, 진방물사 등이 대체로 11월 및 12월에 고려에서 보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다.

45) 금에서의 횡선사 파견은 대개 4월에 보낸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이 고려에서는 6월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횡선사 파견은 서하에도 이루어졌는데, 4월과 5월에 걸쳐 10회, 2월 1회, 10월 1회로 나타난다. 또한 서하에서 보내진 謝橫宣使 기록을 놓고 본다면 5회가 더 추가될 수 있다. 대략 고려와 비슷한 시기에 횡선사가 보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하에서 금으로 보낸 사횡선사는 모두 13회로 나타난다. 12월이 7회, 10월(2회), 8월(4회)였다. 단, 고려와 서하에 보내진 횡선사를 보면, 고려를 기준으로 할 때 명종대부터 1년 차를 두고 서하에 횡선사가 보내지고 있다.

46) 봉은사는 광종 2년 성남에 창건된 사찰로 태조의 원당(願堂)이었다.

47) 『고려사』 권75, 지29 선거3 전주 선법.

요나라의 횡선사가 왔을 때 답례물로 멍쌀 및 찹쌀 등이 보내졌다는 것⁴⁸⁾을 본다면 금나라 때에도 그 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한다.

이상 네 가지는 모두 왕실행사이자 국가적 행사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많은 재물의 수요가 있어 각 지방에서 물산이 올라온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진귀한 물품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6월에 집중된 횡선사 파견은 고려 왕실과 신료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으리라 보며, 반대로는 횡선사를 포함한 사절단 역시 나름대로의 교역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한편, 고려에서 사횡선사가 11월을 중심으로 보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앞서 언급한 사하생신사의 경우처럼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1월은 농한기이기도 하지만 고려왕조 최대의 행사라 할 팔관회 등이 있고, 12월 도목정사를 앞두고 각종 국내외 물산이 모여든다는 점 등이 주목된다는 것이다. 팔관회 때의 경우를 보면, 정종 2년 11월 팔관회 때는 송나라 상인들과 동여진 및 탐라에서 토산물을 바쳤고, 정종 6년의 경우에도 대식국 상인들이 와서 각종 봉물을 진상하였다. 숙종 6년을 보면 11월 팔관회 때 송나라 상인과 탐라 및 동북변 추장들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이처럼 각 지역의 물산이 모이고 이때를 기해 사신들 및 상인들에 의한 교역이 이루어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팔관회 때 중앙과 지방의 관원들은 하표(賀表)를 올려 축하하면서 많은 봉물을 올렸던 것이다. 이렇게 모여든 물산을 중심으로 예물이 준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하생신사 등을 포함한 고려의 사절들은 금으로 들어갈 때 상당한 물품 교역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48) 『契丹國志』 권21, 外國貢進禮物.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관례에 의하면 재상이 금나라로 사신이 되어 가면 그 수행자들은 일정한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무역으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자는 은 몇 근을 사신에게 뇌물로 주고서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시 낭중 최정(崔貞)이 생일회사사(生日回謝使)로 되었을 때 송유인이 자기 종(奴) 1명을 데리고 가라고 부탁한 바 있었으나 최정은 이미 재물을 낸 자로 벌써 만원이 되어서 더 증원할 수 없었는데 그 종은 상전의 세력만 믿고 따라갔더니 금나라 사람들이 검사하고 돌려보냈다. 이 일로 최정은 돌아와서 죄명을 쓰고 면직되었다.⁴⁹⁾

이 기사는 명종 7년 11월 내시원외랑 최정이 생일회사사로 갈 때 있었던 일로 보인다. 말하자면 사행 무역이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행에는 일정한 정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에서는 금에서 허락되는 최대의 인원을 보내려 했음이 나타난다. 명종 13년 8월 양부의 재추가 아뢴 다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매년 사명을 띠고 금나라에 가는 자들이 물품 교역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방물을 많이 가지고 가므로 물품 운반하는 폐단이 생겨 역리들이 괴롭게 여기니 사사로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 꺾은 한도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그 관직을 삭탈하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여 사행무역의 폐단이 지나침을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런데 같은 해 윤11월 사절로 가게 된 이문중(李文中)·한정수(韓正修) 등은 이에 대해 명종에게 종래의 관례처럼 제한을 없애자고 청해 허락을 받아 냈다.⁵⁰⁾

49) 『고려사』 권128, 열전 41 반역2 정중부 부 송유인.

50) 『고려사』 권20, 세가20 명종 13년 8월.

고려의 사절들은 그 수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하사(夏使)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물품을 하사받았을 것이다.⁵¹⁾ 서하의 사신단은 대략 40여 명 안팎으로 이들은 恩華館에 묵으면서 금의 조정으로부터 2~3일간 무역을 허락받고 있었다.⁵²⁾ 특히 고려의 사신단 역시 이들과 비슷한 지위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 간의 교빙과 교역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고려의 사절들은 때로 별도로 금의 조정에 예물을 사진(私進)하여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 이에 대해 금 세종 대정 5년(고려 의종 19년) 세종은 이것이 전례(典禮)에 응하지 않는다 하여 금지시킨 바 있었다.⁵³⁾ 이러한 관행은 이미 고려-송 간 사절 왕래 때 형성되어 있었다. 북송 소식(蘇軾)의 경우 고려가 화풍을 양모한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세사(歲賜)의 이익을 얻고자 한 것⁵⁴⁾이라는 이해는 이같은 정황을 보여준다. 송 원풍 연간의 경우 송측 연로의 정이 모두 고려정이라 전한다고 할 정도로 많았음을 전해 준다.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전반기에는 송-요, 송-금 간의 군사적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북방과 남방의 교역은 상당히 어려웠다. 송에서도 북방의 물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여진 땅에는 진귀한 물자가 많이 생산되는 까닭에 고려에서는 전부터 여진과 교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 사람들이 교역의 이익을 우리에게 빼앗길까 꺼리어 고의로 방해하려는 것입니다.”⁵⁵⁾라고 한 송의 인식은 이를 보여준다. 고려

51) 서하의 경우 받은 물품을 보면, “凡賜衣 使副各三對 人從衣各二對 使副幣帛百四十段 舊又賜貂裘二 無則使者代以銀三錠 副代以帛六十疋 後削之 惟生餼則代以綾羅三十九疋 帛六十二疋 布四匹 金帶三 金鍍銀束帶三 金塗銀間裝鞍轡三 金塗銀渾裏書匣 間金塗銀裝釘黑油詔匣及包書 詔匣復各一 朝辭賜人從銀二百三十五兩 絹二百三十五疋” 등이었다(『금사』 권38, 지19 예11 新定夏使儀注).

52) 고려의 사신단 규모 역시 서하와 비슷한 규모였으리라 생각된다.

53) 『금사』 권135, 열전73 외국 하 고려, 세종 대정 5년.

54) 蘇軾, 『소동파전집』 奏議集 권6, 「論高麗進奉狀」.

55) 『고려사』 권95, 열전8 제신 이자연 부 이자량.

와 송은 거란과 여진 등 북방 세력을 마주하고 있는 관계로 직접 교류 관계를 지속하지는 못하였지만 송의 상선들은 고려에 거의 무제한으로 드나들어 양국 간의 교역을 포함한 비밀외교까지도 감당하였다.

거란과 여진 등 북방 세력은 송과 고려가 가지고 있는 동기(銅器)나 종이, 비단 건축물 등 수공업 제품 등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이를 교역하기 위해 노력했으리라 여겨진다.⁵⁶⁾ 각장(樵場)이나 호시(互市) 등이 이를 나타내 주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식적이면서도 주기적인 사절 왕래를 중심으로 한 교역 형태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말하자면 고려는 남방이라 할 송이나 북방 세력이라 할 거란·여진 등의 교역 물품이 여러 경로를 통해 오가는 당시 중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고려사』에 기록된 송상의 사례는 모두 135건 정도에 달한다.⁵⁷⁾ 기록 숫자 상으로는 그리 많지 않지만 여기에는 누락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송 상인들의 대부분은 절강, 복건, 광남 등 남중국 연안 지역에서 왔다.⁵⁸⁾ 양자강 하류 명주(明州)는 교역항으로 유명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남서 계절풍이 부는 6,7월 경 출발 8월 경 고려에 도착, 11월 경 북서 계절풍을 이용하여 귀국하였다. 대략 왕복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기는 하였지만 선박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대량의 화물 운송이 가능하였다. 이들은 고려에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다. 고려에서는 이들로부터 물건을 진헌받았고, 그에 따라 고려에서는 가격을 계산하여 수배에 달하는 답례품을 주기도 하였

56) 이에 대해서는 김위현, 『요금사연구』, 유평출판사, 1985, 202~208쪽 참조. 박한남, 1993 앞의 논문 제5장 및 박옥걸, 「高麗來航 宋商人과 麗·宋의 貿易政策」 『大東文化研究』 32, 1997 참조.

57) 이와 관련해서는 박옥걸, 앞의 논문 참조.

58) 김위현의 연구에 따르면 고려-송 간의 항로는 크게 甌津-登州, 甌津-密州노선인 甌津山東路線(東路)와 송의 明州에서 고려의 흑산도, 그리고 서해연안 조운로를 따라 들어오는 黑山定海路線(南路)이 있었는데, 문종 28년 이후로는 흑산정해노선이 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김위현, 앞의 책, 208~217쪽).

다. 또한 그들은 물품을 시장에서 거래하기도 하였고 고려왕조 최대의 국가적 행사인 팔관회에 도강(都綱) 혹은 강수(綱首)로서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많은 거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선박 무역에 많은 송 상인들이 참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겠다.⁵⁹⁾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고려와 금의 사절 왕래 중 금의 하생일사와 이에 대한 고려의 사하생일사, 그리고 금의 횡선사와 사횡선사 등의 파견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진 배경이 양국간의 정치외교적 관계를 포함한 다른 요소 즉 교역이라는 면이 큰 작용을 했다고 보여 진다는 것이다. 즉, 고려왕조에는 11월과 6월을 중심으로 많은 국내외 물산이 모이는 시점이었으므로 이 시기를 매개로 한 고려 및 송 상인과 북방 세력 간의 교역이 이루어졌고, 금의 수도에 들어간 고려의 사절들 12월 및 정월 하례 때를 중심으로 사절 무역 등을 적절히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고려와 금은 인종 4년 4월 상표칭신과 금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종 5년 정월의 하생일사가 파견되면서 국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과 송의 전선이 일진일퇴를 거듭하자 고려와 금의 조공책

59) 한편 중동팔관회를 중심에 놓고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 무역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정황은 대략 알 수 있으나 고려와 금간의 국교가 지속되던 시기에 팔관회 관련 기록 및 그 규모 등에 대한 기록이 상세치 않아 분명한 시각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고려와 남송, 고려와 금 간에 이루어진 교역 규모와 교역 내용 역시도 여기서는 정리하지 못하였다. 관련 기록에 대한 발굴과 정리가 시급하다 본다.

봉은 상당히 어려웠다. 인종 19년 즉 금 황통 원년에 이르러 금에 대해 남송이 군신사대를 맺자 그 이듬해에 이르러서야 인종에 대한 첫 책봉이 이루어졌고, 금의 연호 황통도 같은 해 7월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양국 간의 사절 왕래에서 주목되는 점이 발견되는데, 바로 금에서의 하생신사 및 횡선사 파견 시기와 고려에서의 사하생신사 및 사횡선사 파견 시기였다. 일련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던 것이다. 금에서의 하생신사는 고려 국왕의 생일과는 시기가 달랐고 고려에서는 11월을 중심으로 사하생신사를 보냈다. 또한 금에서는 6월을 중심으로 횡선사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고려에서는 11월을 중심으로 사횡선사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고려는 때로는 금측과 정기 혹은 비정기적 사절 파견을 하여 사행 무역을 서로 주고받았고 혹은 각장 즉 호시를 열어 민간 교역을 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보주 등 영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는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금의 입장에서는 고려에서 생산 제조되는 물품과 남송 및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나는 생산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남송과의 자유로운 교역이 어렵다는 면이 있었다. 즉, 군사적 대치로 경색 관계에 놓여 있는데다가 육로 교통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남송에서도 금에서 생산되는 물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현실적 적대 관계와 육로 교통은 남송과 금의 교역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삼국의 이해관계를 무릅쓰고 서로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추구되었다. 그것이 바로 고려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금의 속국이 된 서하도 있었다. 이로 인해 당시 남중국 상인들을 중심으로 남송과 북조를 잇는 삼각 무역의 꼭지점 역할이 고려에 요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려와 남송, 고려와 금 간의 사절 파견은 고려 내에 봉물의 공급이 집중되거나 혹은 고려 내 국가적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를 중점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고려 역시 이때의 물품을 봉물 내지는 무역품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결국 그 중심 시기인 6월과 11월 등을 중심으로 사행 왕래가 이루어졌고 이때 사행 무역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찾을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로 본다면 고려-금-남송이 정립되었던 시기 고려와 금의 사절 파견이 사대조공책봉이라는 정치 위상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 설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려-남송-서하-금의 교역망이 형성되고 그 속에서 사절 파견이 정형화되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고려는 금에 서하에서는 파견례가 극히 드문 사하생일사까지도 파견함으로써 금의 정월 하례 때 이를 포함한 사횡선사, 진헌사, 하정단사 등 4종류의 사신단 대략 도합 100여명 이상의 사절단이 금에 들어가 사신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교역을 통한 이익을 도모했던 것이다.

Abstract

The Periodicity and the Meanings in the
Diplomatic Intercourse of Missions between
Goryeo and Geum (Yeojin)

Han, Jung-Soo

In 1141 (the twentieth year from the accession to the throne of Injong and the second year of Hwangtong, the name of the era of Geum (Jin dynasty)), Injong was first invested by Geum. In July of the same year, the relationship of investment and tribute between Goryeo and Geum was virtually made by the employment of Hwangtong and diplomatic intercourse of missions between them was regularized.

In this study, by examining the realities of the diplomatic intercourse of missions between Goryeo and Geum, I seek to consider its periodicity and find the meanings of it. In particular, I pay attention to the backgrounds and meanings of the times and periodicity of the missions concerning birthday and special royal edict (Hoengseon). Although the analysis is made centering on Goryeo, I think that the backgrounds of it were national ceremonies of Goryeo in July and November.

In brief,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e following. The diplomatic intercourse of missions between Goryeo and Geum was not made unilaterally in the political aspect of toadyish tribute and investment. The courtesy of diplomatic missions between Goryeo and Geum followed the system of Yo (Liao Dynasty), but

고려-금 간 사절 왕래에 나타난 주기성과 의미

various foreign trades accompanying diplomatic missions were officially developed in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Goryeo and Geum. The network of trade of Goryeo-Southern Song-Western Xia-Geum was made centering on them and the dispatch of diplomatic missions was regularized.

Key Words : Calling oneself vassal and dedicating statement,
Toadyish tribute, Diplomatic intercourse of missions,
Periodicity, Foreign trade accompanying diplomatic
missions